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원문화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

(이연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77
----------	------

발의연월일 : 2023. 10. 10.

발의의원 : 이연숙 의원,

김보경 의원, 박주용 의원

1. 제안이유

마을정원사 양성 및 활용 등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 주도하는 정원 문화를 확산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달성군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군수의 책무 규정(안 제2조~제3조)
- 나. 시행계획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제5조)
- 다. 정원 전문가 활용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라. 개방 민간정원 및 정원문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7조~제8조)
- 마. 마을정원사 양성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원문화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 주도하는 정원문화 확산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를 따른다.
2. “민간정원”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면서 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
3. “공동체정원”이란 군에 소재하면서 법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
4. “생활정원”이란 군에 소재하면서 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
5. “정원문화”란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서로 소통·화합하는 활동과 그 결과물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 주도의 정원문화 확산 및 활성화(이하 “정원문화 활성화 등”이라 한다)를 위해 군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군수는 정원문화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원문화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정원문화 활성화 등을 위한 기본 목표와 방향
2. 민간정원 등 조성 현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원문화 활성화 등과 관련된 시책 및 추진계획
4. 주민정원사 양성 및 활용 장려에 관한 사항
5. 정원문화산업 관련 국제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원문화 활성화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단체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정원문화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 ① 군수는 정원문화 활성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과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식물·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과 기술지도 등 실습 교육
4. 정원에 관한 체험학습·개방정원 투어·전시회 등 행사 개최
5. 소식지, 언론을 통한 식물·정원에 관한 홍보 및 정보제공
6.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7. 정원에 관한 경연 및 시상
8. 정원 캠페인 추진
9. 그 밖에 정원문화 활성화 등을 위한 활동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정원 전문가 활용 등) 군수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의15에 따라 지정된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에 자문하거나 법 제18조의17에 따라 선발된 정원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제7조(민간정원 개방 장려 및 지원) ① 군수는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정원이 법 제18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 후 제1항에 따라 일반에 공개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8조의6제4항

에 따라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정원문화 활성화 등의 지원) ① 군수는 군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군 내 정원문화가 확산 및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군민 주도의 공동체정원 조성 및 관리
2. 군민 대상 정원문화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 의식 함양
3. 군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원문화 관련 캠페인
4. 그 밖에 군수가 정원문화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마을정원사 양성 및 활용) 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정원문화 활성화 등을 위하여 마을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다른 기관·법인·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원사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군민에게 마을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고, 마을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및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활동에 마을정원사를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마을정원사를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마을정원사 양성, 인증 및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2023.7.25. 타법개정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목원”이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존·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가.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 시설

나. 수목유전자원의 관리시설

다. 화목원·자생식물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

라. 그 밖에 수목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

1의2.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

2. “수목유전자원”이란 수목 등 산림식물(자생·재배 식물을 포함한다)과 그 식물의 종자·조직·세포·화분(花粉)·포자(孢子) 및 이들의 유전자 등으로서 학술적·산업적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을 말한다.

3.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란 수목유전자원 또는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수목원 또는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존·전시하기 위하여 제18조의15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에서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4. “희귀식물”이란 자생식물 중 개체수와 자생지가 감소되고 있어 특별한 보호·관리가 필요한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말한다.

5. “특산식물”이란 자생식물 중 우리나라에만 분포하고 있는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말한다.

6. “정원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7. “정원치유”란 정원의 다양한 기능과 자원을 활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제18조의4(정원의 등록) ① 정원(국가정원은 제외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정원과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일반에 공개하는 정원은 등록하여야 한다.

1. 정원의 명칭

2. 정원의 소재지

3. 정원 운영자의 성명·주소

4. 정원의 시설명세서

5. 보유하고 있는 식물의 목록

6. 그 밖에 정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식물의 목록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방정원과 일반에 공개하는 정원은 제1항 각 호의 등록 사항 외에 정원 전문관리인 및 시설 등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정원 전문관리인 자격 및 시설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정원의 등록증 발급, 개원 및 휴원(공개되는 등록정원에만 해당한다), 등록의 말소, 시정요구 및 등록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18조의6(정원의 운영·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원 관리 자동화 기술 등 신기술이 정원의 운영·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정원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원 내 식물의 보존·증식 및 시설물의 안전·위생 관리 등 정원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의15(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추어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지정표시”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지 아니한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지정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에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및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17(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의 활용)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수목원 또는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